정 관

개정 1969 년 6 월 5 일 정관 제 1 호
개정 1969 년 7 월 3 일 정관 제 2 호
개정 1970 년 5 월 15 일 정관 제 3 호
개정 1970 년 6 월 26 일 정관 제 4 호
개정 1971 년 2 월 25 일 정관 제 5 호
개정 1972 년 6 월 30 일 정관 제 6 호
개정 1973 년 2 월 22 일 정관 제 7 호
개정 1975 년 2 월 27 일 정관 제 8 호
개정 1976 년 2 월 27 일 정관 제 9 호
개정 1976 년 8 월 16 일 정관 제 10 호
개정 1977 년 2 월 25 일 정관 제 11 호
개정 1977 년 7 월 22 일 정관 제 12 호
개정 1978 년 2 월 27 일 정관 제 13 호
개정 1979 년 2 월 27 일 정관 제 14 호
개정 1980 년 2 월 27 일 정관 제 15 호
개정 1984 년 2 월 25 일 정관 제 16 호
개정 1985 년 2 월 27 일 정관 제 17 호
개정 1986 년 2 월 27 일 정관 제 18 호
개정 1987 년 2 월 26 일 정관 제 19 호
개정 1988 년 2 월 27 일 정관 제 20 호
개정 1989 년 2 월 28 일 정관 제 21 호
개정 1990 년 2 월 27 일 정관 제 22 호
개정 1991 년 2 월 27 일 정관 제 23 호
개정 1992 년 2 월 28 일 정관 제 24 호
개정 1995 년 2 월 28 일 정관 제 25 호
개정 1996 년 2 월 28 일 정관 제 26 호
개정 1997 년 2 월 27 일 정관 제 27 호
개정 1998 년 2 월 27 일 정관 제 28 호
개정 1999 년 2 월 26 일 정관 제 29 호
개정 2000 년 3 월 17 일 정관 제 30 호
개정 2001 년 3 월 16 일 정관 제 31 호
개정 2002 년 3 월 15 일 정관 제 32 호
개정 2003 년 3 월 14 일 정관 제 33 호
개정 2008 년 3 월 21 일 정관 제 36 호
개정 2009 년 3 월 20 일 정관 제 37 호
개정 2010 년 3 월 26 일 정관 제 38 호
개정 2011 년 3 월 25 일 정관 제 39 호
개정 2012 년 3 월 23 일 정관 제 40 호
개정 2012 년 7 월 27 일 정관 제 41 호
개정 2013 년 3 월 22 일 정관 제 42 호
개정 2015 년 3 월 27 일 정관 제 43 호
개정 2018 년 3 월 26 일 정관 제 44 호
개정 2019 년 3 월 28 일 정관 제 45 호
개정 2020 년 3 월 27 일 정관 제 46 호
개정 2020 년 12 월 29 일 정관 제 47 호
개정 2021 년 3 월 30 일 정관 제 48 호

개정 2006 년 3 월 17 일 정관 제 34 호
개정 2007 년 3 월 16 일 정관 제 35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ANKOOK & COMPANY CO., LTD.라 표기한다. (정관 제47호)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정관 제41호)
2.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과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정관 제41호)
3. 각종 상품의 매매업 (정관 제41호)
4.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정관 제41호)
5. 신기술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정관 제41호)
6. 각종 타이어 및 기타고무제품 제조에 관한 기술용역업 (정관 제41호)
7. 국내외 무역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 (정관 제41호)
8. 위탁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업 (정관 제41호)
9.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제품매매 및 관련 부대 사업(정관 제41호)
10.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정관 제41호)
11.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정관 제41호)
12. 팩토링업 (정관 제41호)
1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및 상표권, 지식,정보,기술 등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의 관리, 라이선스, 판매 및 관련 용역사업 (정관 제41호)
14.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유통, 공급과 이에 필요한 소재, 기기설비의 제공 관련 사업 (정관 제41호)
15. 도,소매업, 통신판매업을 포함한 각종 유통사업과 신용카드업 및 전자적 지불수

단의 발행, 예치, 판매 등 관련 금융사업 (정관 제41호)
16.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및 시설관리 등을 포함하는 사무지원 서비스 사업 (정관 제41호)
17. 광고사업 및 PR관리 관련 사업 (정관 제41호)
18. 벤처캐피탈업 등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 융자, 관리, 운영사업 (정관 제41호)
19. 자동차의 매매,대여,관리,등록대행 등 자동차 관련 사업 (정관 제41호)
20. 통신판매업 (정관 제41호)
21.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 사업 (정관 제41호)
22. 창업과 관련된 투자, 정보 및 서비스제공, 알선, 보육센터의 운영 등 창업지원사업 (정관 제41호)
23. 시험분석 서비스 및 관련 사업 (정관 제41호)
24. 영상표시장치, 전지 등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소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부가사업 (정관 제41호)
25. 가맹사업의 참여, 가입, 유치,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정관 제41호)
26.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정관 제27호)
27.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28. 자동차 정비 점검 및 수리업
29. 기계, 산업설비류 및 기타부품류 제조, 조립, 장비 임대 및 판매업
30. 주택사업, 주거용 건물 분양 공급 및 임대업 (정관 제29호)
31.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
32. 운수, 운수관련 서비스업 및 보관, 창고업
33. 수출입 및 도소매업
34. 신소재 및 비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35. 운수장비 및 기타부품의 제조, 조립 및 판매업
36.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37. 주유소 사업 (정관 제27호)
38. 교재출판, 유통 및 교육장 운영 등을 포함하는 각종 교육서비스업(정관 제41호)
39. 인터넷 및 정보통신업 (정관 제30호)
40.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및 종합레저사업 (정관 제33호)
41. 연료전지용 분리판 및 부품류 개발, 제조, 판매, 연구용역업 (정관 제40호)

42.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정관 제41호)
43.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정관 제41호)
44. 시스템 매니지먼트 서비스의 판매업 (정관 제41호)
45. 전기통신업 (정관 제41호)
46.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통신업 및 관련업(정관 제41호)
47.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정관 제41호)
48.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기타 저작물의 개발, 판매, 임대업 (정관 제41호)
49. 컴퓨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의 제조, 판매, 임대, 수리업, 기타 서비스업(정관 제41호)
50. 별정통신사업 및 기타 전기통신업 (정관 제41호)
51. 경영, 정보기술, 솔루션 컨설팅 서비스업 (정관 제41호)
52. 계열사에 대한 자금과 업무지원사업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 (정관 제42호)
53. 축전지 및 건전지와 기타 전지 제조판매업 (정관 제48호)
54. 축전지 및 건전지류 수입· 판매업 (정관 제48호)
55. 축전지 제조에 관한 기술용역 (정관 제48호)
56. 축전지 제조설비 판매업 (정관 제48호)
57. 신소재 및 비철금속제품제조 및 판매업 (정관 제48호)
58.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관 제48호)
5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정관 제42호)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단, 본 본점 소재지 변경의 효력은 2020년 4월 20일부터 발생한다. (정관 제46호)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영업소, 사무소, 현지법인, 작업소 및 공장을 둘 수 있다. (정관 제37호)

제 4 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kookandcompany.com)에 게재한다. (정관 제47호)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정관 제41호)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억 5천만주로 한다.(정관 제28호)

제 6 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정관 제28호)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정관 제 41 호)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 41 호)

제 8 조 (배당우선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② 1종 종류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정관 제44호)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정관 제44호)
④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정관 제44호)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관 제44호)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배정하는 신주는 이사회가 결의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할 수도 있고 1종 종류주식 또는 정관이 정하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 (정관 제44호)

제 8 조의 2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②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주식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정관 제44호)

제 8 조의 3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서는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정관 제44호)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정관 제45호)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정관 제44호)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정관 제44호)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정관 제44호)
⑥ 본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44호)
⑦ 본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44호)
⑧ 본 회사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정관 제44호)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33호)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정관 제33호)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41호)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

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정관 제32호)

제 12 조 (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정관 제48호)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정관 제 9호)
②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정관 제 45호)
③ 제 2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정관 제 48호)

제 14 조 (삭제) (정관 제45호)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정관 제 29호)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 48호)

제 3 장 사 채

제 16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 40 호)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정관 제 40 호)

제 16 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제 45호)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정관 제44호)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

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정관 제44호)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관 제44 호)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정관 제 48호)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8,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정관 제44호)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 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정관 제44호)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정관 제44호)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관 제44호)

제 18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정관 제48호)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정관 제48호)

제 4 장 주주총회

제 19 조 (소집시기)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정관 제33호)

제 20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 유고시는 제23조 규정을 준용한다.(정관 제33호)

제 21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및 "서울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정관 제37호)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공장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정관 제36호)

제 23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38호)

제 24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정관 제25호)
②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정관 제25호)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정관 제33호)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

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정관 제29호)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정관 제29호)

제 28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정관 제33호)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정관 제33호)

제 30 조 (삭 제) (정관 제44호)

제 31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 회사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 32 조 (이사의 수)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 제35호)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정관 제45호)

제 33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정관 제31호)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정관 제31호)
③ 이사의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정관 제29호)

제 34 조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정관 제35호)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정관 제35호)

제 35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정관 제33호)

제 36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정관 제33호)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관 제33호)

제 37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정관 제48호)

제 38 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제48호)

제 39 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정관 제31호)

제 41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정관 제40호)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정관 제41호)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31호)

제 42 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정관 제33호)

제 43 조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정관 제 35 호)
3. 경영위원회(정관 제 36 호)
4. 내부거래위원회(정관 제 41 호)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정관 제48호)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1호)

제 44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정관 제31호)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정관 제31호)

제 45 조 (상담역 및 고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담역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6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관 제41호)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48호)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관 제48호)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정관 제32호)

⑥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관 제45호)

제 47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소집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정관 제45호)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정관 제41호)

제 48 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정관 제31호)

제 7 장 계 산

제 49 조 (회계년도)
본 회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정관 제40호)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정관 제41호)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41호)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정관 제41호)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정관 제41호)

제 51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45호)

제 52 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2 조의 2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보통주식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배정할 수 있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우선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43호)

제 53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정관 제40호)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배당하는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정관 제43호)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정관 제33호)

제 54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정관 제33호)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정관 제33호)

부 칙

1. (세칙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정관 제29호)
2. (적용범위) 본 정관의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의사록에 의하고, 의사록에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3. 본 정관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4호)
4. 본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및 제4조는 2019년 5월 8일부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5호)
5. 본 정관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7호)
6. 본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48호)